

기획조사 06-054

#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 (4) -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 (4)  
-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

---

## 요 약

특허권,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우리 기업들이 점차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보유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증가추세이다.

KOTRA에서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및 대응사례 보고서의 마지막편인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 제품의 디자인, 상표권 등의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지재권 제도 현황을 다루고 있다.

금번 조사대상국인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는 모두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AE의 경우 제조업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모조품 적발 시 생산업체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브라질의 경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이 향후 회사 존망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지 지적재산권 등록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신임 있는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고 현지시장에서의 모조품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현지 시장여건을 통찰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도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 및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실제로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시는 침해 기업과의 단순 합의를 유도하기보다 전문 변호사를 활용하여 신속히 법적대응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해야 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는 확실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대응 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다각적 조치가 모색되어야 하겠다.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보급의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특허의 전략적 보호를 위한 정책 및 해외 전문가의 접촉과 활용에 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자·양자간 협상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I. 개관 /1

II. 남아공 /3

III. 멕시코 /14

IV. 브라질 /21

V. UAE /54

VI. 맺음말 /61

## I. 개관

- 특허권(Patent), 저작권(Copyright), 상표권(Trade Mark), 디자인권(Design) 등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후부터는 지재권이라 칭함)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
- 지재권은 분야에 따라서는 오랜 기술 및 경험 노하우의 축적물이거나 집중적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R&D)의 산물임.
- 우리나라는 과거에 독자적인 기술 및 그 밖의 보호할 만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지적재산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선진국의 기술 및 상표를 모방함으로써 기술 및 기타 노하우를 축적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점차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보유하면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확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상품의 지재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시장의 지재권 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상품의 세계시장 선점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임.
- 조사 대상 국가 : 23개국의 29개 KOTRA 무역관이 주재국에서의 지재권 이슈를 조사하였음. (이 중 본 보고서는 동 시리즈의 마지막편인 “남아공, 브라질 등 4개국편”임)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EU, 독일, 러시아, 영국, 폴란드
- 아시아·대양주 :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홍콩
- 기타 :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UAE

## II. 남아공

### 1.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 가. 개요

##### 1) 지재권 담당 정부기관 : CIPRO

남아공에서 지재권 관련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상무부 산하 “Company and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Office(CIPRO)임.

- 동 기관은 지난 2002년 3월 남아공 회사등록청(Company Registration Office)과 특허·상표 등록청(Patent & Trademark Office)간의 통합을 통해 발족되었음.

CIPRO의 주요 업무

- 남아공 내 일반회사 및 비영리법인 등록에 관한 업무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 지재권의 등록, 진흥, 보호 등에 관한 업무

##### 2) 지재권 보호정책 기조

남아공 정부는 지재권 관련 대부분의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는 등 지재권 보호에 적극적임.

- 남아공은 세계 지재권 기구(WIPO)의 초대 회원국이며, 파리 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 의정서의 가입국임.
- 美 무역대표부는 남아공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률체계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단, 법률 집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지재권 보호에 적극적 태도를 견지함.
  - 남아공이 지재권 보호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국 내에 외국 기업의 지재권 등록을 확대하여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임.

### 3) 지재권 관련 법률 구조

- 남아공의 지재권 법률체계는 크게 하기의 4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
  - 특허법(1978년), 상표법(1993년), 디자인법(1993년), 저작권법(1978년)
- 이 외에 지재권 관련 법률로는 Merchandise Mark Act(1941년), Cinematographic Films Act(1977년), Performer's Protection Act(1967년), Plant Breeder's Right Act(1976년) 등이 있음.

- 남아공 정부는 1997년에 지재권 보호를 강화 및 WTO 내 TRIPS 규정과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해 Counterfeit Goods Act 및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를 제정한 바 있음.

## 나. 보호 세부내역

### 1) 특허권

- 관련 특허법이 1978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음.

- 특히, 제 6차 개정(1997년)을 통해서는 “Patent Co-operation Treaty(1970년)”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특허권 갱신 수수료 및 특허권 침해규모 산정, 특허권자와 에이전트간의 우선관계 등을 명확히 함.

### □ 특허권 주요 내용

- 남아공에서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나 연장되지 않음.
- 자연법 및 도덕률에 위반되거나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없는 특허는 인정되지 않음.

### 2) 상표권

- 상표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1997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음.

- 동 법률 개정을 통해 상표권 등록에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권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유사 상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상표권 소유자의 우선적 권리를 강화하였음.

#### 주요 내용

- 상표권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 정부와 관련된 상표, 자연법에 위배되거나 소비자들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음.

### 3) 디자인

#### 디자인법은 1993년도에 제정되었으며, 1997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음.

- 1997년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 디자인에 대한 강제면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자인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였음.

#### 주요내용

- 디자인 등록은 제조물의 외형이나 장식 등에 대해서 가능하나, 예술품, 기존에 사용되었던 디자인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 디자인 보호기간은 최초 5년, 두 차례에 걸쳐 5년씩 연장이 가능해 최대 15년이나, 실용 디자인은 10년 이상 보호되지 않음.

#### 4) 저작권

□ 저작권법은 1978년에 제정된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될 정도로, 남아공 정부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높음.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 개정에서는 영화부문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까지 저작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였음.

- 2002년 개정에서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경제부에서 상무부로 이관하였으며,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주요 내용

- 창의적인 작업과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창의적인 작업의 결과물 발생 직후 시작되나, 상업용 영화 및 비디오 영상물은 등록이 필요 함.

-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사망 이후 50년까지이나, 연주자의 저작권은 20년간만 보호됨.

- 저작권 보호대상 : 문학작품, 음악 및 예술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음원, 영화, 라디오/TV 방송물, 기타 영상물 등

## 5) 지재권 개정

- 1997년에 남아공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재권법이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률이 대부분 개정되었음.
- 동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법, Merchandise Marks Act, Performers' Protection Act 등임.

## 6) 모조품 단속법

- 1997년에 제정된 모조품 단속법은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동 법률은 모조품 생산이나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단속을 통해 모조품(또는 의심되는 제품)을 압류 및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통관도 거부됨.
- 특히 2001년에는 모조품 단속법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인원 증원, 모조품 압류창고 확대, 모조품 소각 등의 조치를 단행함.
- 이와 함께 모조품 생산,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초범에게는 모조품 1개당 벌금 800불 또는 3년 징역, 재범의 경우는 모조품 1개당 벌금 1,600불 또는 5년 징역의 형량을 부과함.
- 이러한 모조품 단속 강화결과, 불법 DVD 및 프로그램 배포자 검거실적이 2003년 14명에서 2004년 104명으로 대폭 증가함.

## 다.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절차

### 1) 특허권

□ 남아공 특허법 제11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됨.

- 1단계 : 특허권 침해 발생시 특허법원(Patent Court)에 소송 제기
- 2단계 : 피고의 반론(특허권 취소 요구 등)
- 3단계 : 특허침해 인정판결 시 구제방식 결정
- 4단계 : 구제방식은 특허권 침해품목 판매금지 또는 회수, 손해배상 등

### 2) 저작권

□ 남아공 저작권법 제12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됨.

- 1단계 : 저작권 침해 발생시 원고에 의한 저작권 침해 증거 제시
- 2단계 : 피고의 반론
- 3단계 : 법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정 및 피해액 산정
- 4단계 : 저작권 침해물 판매금지, 회수, 손해배상 등
  - 저작권자는 이 외에도 관세청에 일정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물의 수입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 3) 상표권

□ 남아공 상표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진행됨.

- 1단계 : 고등법원을 통해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 2단계 : 피고의 반론
- 3단계 : 법원에 의한 상표권 침해여부 판정 및 피해액 산정
- 4단계 : 상표권 침해물 판매금지, 상표제거 또는 회수, 손해배상 등

### 4) 디자인권

□ 남아공 디자인법 제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됨.

- 1단계 : 디자인권 보유자에 의한 소송 제기
- 2단계 : 피고의 반론(디자인권 취소 요구 등)
- 3단계 : 법원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여부 판정 및 피해액 산정
- 4단계 : 디자인권 침해물 판매금지, 디자인 제거, 손해배상 등

## 2. 외국기업 대응사례

### 가. 의약품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분쟁사례

□ 1998년 39개 제약회사들은 남아공 정부가 개정한 의약품관리법 (Medicines Act)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WTO TRIPS(Trad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 남아공 정부는 자국내 의약품 공급확대 및 가격인하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병행수입(Parallel Imports) 및 강제면허 (Compulsoty License)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39개 제약회사들은 남아공 정부의 동 조치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함.

### □ 소송 결과

○ 남아공 정부는 개정된 의약품 관리법을 WTO TRIPS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행하는 선에서 소송 제기 기업들과 협의함.

○ 이와 더불어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의약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에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함.

### 나. 소프트웨어/영상물 저작권 침해관련 미국 기업의 대응사례

□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협회인 "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남아공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함.

- 동 협회는 남아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37%에 달해 미국기업들이 약 91백만불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 동영상물 협회(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는 남아공 내 동영상 불법복제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동 협회에 따르면, 2004년도 남아공의 동영상 불법복제율이 40%(2001년, 15%), 피해액이 35백만불에 달했다고 주장함.
- 상기 협회들은 美 무역대표부를 통해 남아공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함.

### 3. 유의사항

-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침해유형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 지재권 침해는 지식재산 미등록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식재산 발생 직후 주재국 당국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함.

□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리 강화

-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재권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재권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지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다시 말해, 생산제품, 공자설비 등과 같은 유형자산 뿐 아니라 지재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재권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현지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 해외진출 기업들의 경우, 주재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재권 침해사례가 종종 발생함.
  - 현지 시장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미등록 및 등록지연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됨.
  - 따라서, 현지 지재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등록을 통해 가능한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

### III. 멕시코

#### 1.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 가.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산업 지적재산권법(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y Ley de Derechos de Autor)

- 1991년 6월 27일 발효된 이후 5회 개정된 바 있음.
- 멕시코 지재권은 크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표시, 기업 비밀 등으로 분류됨.
- 단, 저작권은 별도의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 Derechos de Autor)으로 관리하고 있음.
  - 연방저작권법은 1996년 12월 24일 발효된 이후 2차례 개정된 바 있음.

□ 지재권 보장기간

- 특허권 : 20년
- 상표권 : 10년 (10년 단위 연장 가능)
- 디자인 : 15년

□ 지재권 관리기관

- 기관명 : 멕시코 지적재산권연구소(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IMPI)
- 홈페이지 : [www.impi.org.gob.mx](http://www.impi.org.gob.mx)
- 주소 : Av. Periferico Sur No. 3106, Col. Jardines del Pedregal, C.P. 01900, Mexico D.F., Mexico
- 전화 : 52-55-5334-0700
- 팩스 : 52-55-5624-0473
- 성격 : 과거 경제부 산하기관이었으나, 1994년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능 : 멕시코 내 지재권 관리(승인 포함), 감독

나.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절차

- 지재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IMPI(멕시코 지적재산권 연구소)는 구제 또는 처벌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음.
- 지재권 침해 업체에게 침해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 명령
  - 시장 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 유통 금지 명령
    - 불법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된 상품

- 지재권을 침해한 제품, 포장, 용기, 광고용품 및 기타 유사용품
- 상기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도구 등
- 지재권 침해 제품의 즉각적인 유통 또는 사용 금지 명령
- 지재권 침해행위 금지 명령
- 상기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재권 피해 제품을 유통(판매)하던 상점 폐쇄 또는 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

#### □ IMPI의 조사 및 처벌 권한

- 조사
  - IMPI는 지재권 침해 여부 파악을 위해 조사 및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음.
  - IMPI의 지재권 침해 여부 조사활동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만 가능함.
  - IMPI로부터 승인 받은 사람은, 이를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음.
  - 참고로 침해 사례 고발이 있을 경우, IMPI 조사가 개시되면 침해자는 1달 내에 반박자료 및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단, 1달이 지나도 추가자료 제출은 가능함)

○ 침해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

- 지재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하루 최저임금(47페소 / 약 4.5불)의 20,000배 즉, 90,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하루 최저임금(47페소 / 약 4.5불)의 500배 즉, 2,250불의 추가벌금이 매일 부과될 수 있음.<sup>1) 2)</sup>
- 최고 90일간의 영업정지
- 영업 취소(면허 취소 등)
- 최고 36시간의 감금 등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 IMPI의 조사결과, 이에 상응하는 해결안을 제시했음에도 피해 당사자가 추가 보상을 주장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1) 참고로 결정된 범칙금은 IMPI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에 납부함.

2) 범칙금은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루 최저임금(대표적으로 멕시코시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

## 2. 외국기업의 대응사례

### 가. 스페인 신발업체 브랜드 도용 사례

- 스페인의 유명 신발 브랜드가 멕시코 진출을 앞두고 상표 등록절차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이미 멕시코 기업에 의해 동일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됨.
- 동 스페인 회사는 멕시코 지적재산권관리기관(IMPI)에 도용되고 있던 상표의 무효 청구를 함.
- 동 스페인 회사는 자사 상표가 스페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에서 등록 및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여 상표 도용을 성공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음.
- 그 결과, 멕시코 업체의 동 상표 사용이 취소되고 스페인 업체는 성공적으로 멕시코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음.

### 나. L'Oreal - Nutrisa간의 유사 상표권 사용 분쟁

- 1999년 4월, 미국 화장품 회사인 L'Oreal사는 멕시코 건강보조식품 및 아이스크림 전문회사인 Nutrisa사 브랜드 ("Nutrisa")와 유사한 "Nutrisse"라는 브랜드를 L'Oreal사 샴푸에 사용함.
- 건강보조식품 Nutrisa사는 L'Oreal사의 "Nutrisse"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IMPI의 침해 여부 조사과정에서 L'Oreal사는 화장품 전문업체로 알려져 있는 반면, Nutrisa사는 식품관련업체로 인식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소지가 적음을 입증함.
- 양사 모두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L'Oreal사는 Nutrisa에 대한 위로금 형식으로 20만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음.

#### 다. 와인 브랜드 "italiana"의 상표 도용

- 한 멕시코 업체는 이태리 와인과 주류 상표인 "italiana"를 사용하면서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심지어 생산까지 함.
- 정작 동 상표권 소유업체인 이태리 업체가 멕시코 시장진출을 시도할 때, 자사 브랜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음이 파악되어 IMPI에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함.
- 조사 중, 이태리 업체가 italiana라는 브랜드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했기 때문에 동 건은 6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친 후 멕시코 업체의 동 상표권 사용 금지로 종결됨.
- 이태리 업체는 멕시코 업체가 브랜드를 사용함에 따른 불법 이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멕시코 시장 내 회사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 보상금 없이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짐.

#### 4. 유의사항

- 멕시코는 지재권 등록 소요기간이 길어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멕시코에서는 특허권을 비롯한 각종 지재권 등록에 4~6개월이라는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멕시코 시장진출 시 우선과제는 지재권 등록임.
  
-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관건
  - 지재권 관련 분쟁 시,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실제 멕시코에서는 변호사의 인맥과 능력에 따라 동일 사건 해결에 큰 차이가 있을 정도임.

## IV. 브라질

### 1. 우리 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 가. 해태전자의 사례

##### 발생시기

- 1997년 6월

##### 세부내용

- 해태전자에서 1997년 브라질 지사개설과 동시에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현지업체가 '해태'라는 상표를 선 등록한 사실이 발견됨.
- '해태'는 상표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질 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표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대응결과

- 해태전자는 브라질업체에게 OEM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었고 상표등록을 포기하게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변호사와의 협의결과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함.

## 2. 지적 재산권 보호 현황

### 가. 정책 개요

- 브라질은 특허, 상표, 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 보호 등 산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중 파리협약의 서명국이며, 동 협약의 개정판인 브뤼셀 협약에도 가입 중임.
  -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기술이전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또한 문학, 예술작품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의 가입국이며, 세계지재권기구(WIPO)를 발족시킨 '스톡홀름(1967년)' 협약에도 가입함.
- 브라질에서 문학, 과학, 예술 소유권은 민법상 규율을 받는데 반하여, 산업재산권은 상법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과 상표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음
- 한편 1992년5월, 브라질의회에서 채택된 '기술사용허가 및 지재권관련 법안'은 의약품에 관한 모든 형태의 특허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함.
  - 특허권의 보호기간 : 20년
  - 실용신안의 보호기간 : 15년
  - 상표권의 보호기간 : 10년

- 저작권의 보호기간 : 70년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 : 50년
  - 동일한 국산 Software가 존재하는 한 외국산 Software의 도입은 금지

## 나. 지재권의 분류

- 지재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新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음.
  - 산업재산권은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공업소유권을 대신하는 용어임.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을 포괄하는 개념임.
  - 新지적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등으로 분류 가능함.
- 한편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과 모델, 상표권, 광고 슬로건, 원산지 표시, 불공정 경쟁 해소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함.

## 다. 브라질 특허청(INPI)

- 소위 국가산업소유권연구소(INPI : 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DUSTRIAL)로 불리우는 브라질특허청은 1970년 설립된 연방기구로 상공관광부에 소속되어 있음.

- 국립공업소유권연구소(INPI)는 산업소유권과 기술이전을 규율하는 규범을 집행하는 고유권능을 갖고 있으며, 하기의 4개 조직으로 구성됨.
  - 특허국 (Dirpa), 상표국(Dirma), 기술이전국(Dirtec), 기술정보센터(Cedin)
  
- 국립공업소유권연구소(INPI)는 기술이전에 관한 등록, 감시뿐 아니라,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직접 책임지고 있음.
  - 특허신청, TRADEMARK 등록, 양도, 양허 사항 감독
  - 특허의 이전 및 허여 조건 개선
  -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과 관련, 정부 보조
  
- 국립공업소유권연구소(INPI)의 재량권 범위 내에는 로얄티의 결정, 감세기준, 해외송금 등 외국 특허 양허인의 이익에 직접 관련된 모든 문제 및 하기 사항이 포괄됨.
  - 외국기술도입 여부 결정
  - 기술도입계약 조건 심사 및 결정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도입계약의 등록거부

- 정부정책, 법률에 위배되는 계약의 수정 결정
- 도입 및 양수 기술의 양수기업에 의한 습득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요구

□ 한편 국립공업소유권연구소(INPI)의 기능은 하기와 같음.

- 특허와 상표의 등록 및 인정을 실시하며, 특히 외국기술 이전시 정부정책 및 경제개발의 기여도를 고려, 기술이전의 승인을 결정함.
- 기술이전, 특허 및 상표권 허여 시 관계 정부기관과 사전 협의를 함.
  - 즉, 국세청과는 소득세 중 로얄티와 기타 경비의 감면문제를, 중앙은행과는 로얄티와 경비의 송금문제를 협의함.

## 라. 지재권 보호 세부 내역

### 1) 특허권

- 브라질에서 특허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신청서(Pedido de Patente)'를 기탁해야 함.
- 특허심사관(Examinador de Patentes)의 심사를 거쳐 특허가 허여되면 브라질 전역에 일정기간동안 특허권이 보호됨.
- 특허신청서는 기술적 보고서, 특허주장, 도안, 요약 등 4가지 단계로 작성해야 함.

□ 그러나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브라질공업소유권법(CPI)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예컨대, 수술기법이나 치료기술은 특허대상이 되지 못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공업화를 할 수 없는 발명도 특허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계획, 판매기법, 계산방식, 금융기법, 광고기법, 등도 특허대상에서 제외됨.
- 강의방식, 건축도면, 예술작품, 음악, 서적, 영화등도 특허대상에서 예외이나, 상당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따라 교육국, CREA(엔지니어·예술분과위원회), 국립도서관 등에 등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관청과 접촉하여 자세한 정보를 선취해야 함.

### ① 특허의 종류

- 크게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로 구분됨.
  - 브라질의 공업소유권법은 특허로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산업모델 등 4가지 특허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산업소유권법이 발표되면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 등 2가지 형태의 특허로 축소됨.

##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과 실용신안

- 브라질 특허출원발명은 신규성(Novelty), 산업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非명확성(Non-Obviousness) 또는 진보성(Inventive Activity)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특허요건도 발명특허와 동일하나 용어상에서 Inventive Activity대신 Inventive Act를 사용하고 있음.
-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새로운 발명'은 브라질과 한국에서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됨.
- 한편 브라질에서는 "발명"의 종류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도덕, 보건, 공공안전 등에 위배되는 발명 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종류를 세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③ 외국특허

- 외국에서 최초로 등록된 특허는 외국특허로 인정됨.
  - 단, 관련국은 브라질이 가입한 특허와 상표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회원국이어야 함.
  - 이 경우, 외국특허출원자는 파리협약에 따라 외국에 특허를 출원함과 동시에, 1년의 보호기간 내에 브라질에도 특허출원을 해야 함.

- 동 기간이 지난 경우, 출원이 안된 발명은 자동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차후 브라질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으로의 로얄티송금이 불가능해짐.

#### ④ 식물다변종 특허

- 다변종식물(plant varieties)의 특허에 관해서는 브라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

#### ⑤ 특허출원절차

##### ○ 예비조사

- 우선 특허출원을 원하는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INPI)에서 조사하는 방식과 특허청에 의뢰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음.
- 직접조사의 경우 INPI 본부에 있는 특허은행(Banco de Patentes)에 사전조사를 신청하면 심사관이 출원내용을 검토하여 가장 유사한 열람자료를 발췌해 주기 때문에 의뢰인은 적은비용으로 쉽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음.
- INPI가 검색한 자료는 실제로 특허출원 시 '기술적 보고서'에 증명자료로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즉 '발명의 범주'와 '사전등록여부 (기술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함.

- 또한, 의뢰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 기존의 유사한 특허 등록서 사본을 구입하여 특허출원서작성시 사용하는 것이 좋음.
- INPI에 사전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별도검색(Busca Isolada)'이라하며, INPI자체의 예비심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사전예측의 장점은 있으나 INPI가 검색을 위해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클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특허출원

- INPI는 출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범(Atos Normativos - AN)을 통해 수시로 발표하고 무상배포 함.
- 그러나 특허출원서의 작성은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특허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이 필요함.<sup>3)</sup>
- 특허의 성격은 발명 혹은 개량 여부에 따라 '발명특권'과 '실용신안'으로 구분됨.
- 과거 특허권을 인정받았던 산업모델(3차원 형태)이나 산업 디자인(2차원 형태)은 국제동향에 따라 특허권대신 산업모델의 등록으로 보호형태가 바뀌고 있음.
- 한편 특허청은 3부의 출원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출원자가 사본을 소지 희망 시, 최소한 4부를 작성해야 함.

---

3) 브라질에는 한국에서처럼 변리사제도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산업소유권만 전문으로 업무를 보고 있음.

-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접수해야 하며 소정의 특허출원서 (Pedido de Privilegio)와 인지세납부용지를 첨부해야 함.
- 접수국은 서류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 후 접수증을 교부하며, 이때부터 특허청은 본격적인 특허심사를 하게 되고 최종발표기간인 18개월간 비밀을 엄수하게 됨.
- 비밀엄수는 특허청의 의무사항이지 특허신청인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신청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음.

○ 공개

- 출원공개는 보통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나, 특허출원자는 특별수수료를 지불하고 관련사항의 公開를 앞당기도록 요구할 수 있음.<sup>4)</sup>

○ 심사청구

- 한 번 공개가 이루어지면 출원자는 의무적으로 기술심사청구를 요구함.
- 만일 공개이후 24개월이 지나도록 출원자가 기술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구는 자동 취소됨.
- 한편 브라질법에서는 특허심사관의 특허심사요구를 심사청구(Requerimento de Exame)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술심사의 청구에 대응됨.

4) INPI는 공개가 있을 때까지 특허출원사실을 비밀로 유지함.

- 일반적으로 기술심사 청구 후 90일내에 특허출원에 관한 INPI의 기술심사결과가 발표됨.
- 제3자의 이의신청
  - 기술심사청구사실이 RPI를 통해 발표된 후, 동 특허요청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이유와 증거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음.
- 최종사정
  -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심사관은 RPI를 통해 심사결과에 관한 기술의견서(Parecer Tecnico)를 발표함.
- 특허증 (Carta-Patente)
  -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관련 결정은 RPI를 통해 발표되며, 이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기다려야 함.
  - 동기간이 경과하면 출원자는 특허증을 교부받음.
- ⑥ 특허의 유효기간과 소멸사유
  - TRIPS규정에 따라 발명특허의 유효기간은 특허 출원일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의 경우는 15년임.
  - 즉, 특허의 존속기간은 최종사정일이 아닌 특허 출원일부터 기산됨.

- 그러나 발명가는 특허 출원일부터 발명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허가 허여되지 않는다면 제3자가 해당특허를 이용할 경우 법적 제제조치를 마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특허가 허여되지 않는 동안에 제3자가 특허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됨.
- 브라질법은 특허출원자가 발명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 3자에 대한 공개 시 내용을 밝히도록 하므로, 제 3자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더욱이 브라질에서 특허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5년이므로, 동 기간동안 특허출원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음.
  - 특허 출원일로부터 특허 부여일까지 제 3자가 해당 발명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심적, 물적피해는 보상받지 못함.
- 침해구제를 청구한 이후부터 특허출원자는 특허권의 허여를 할 수 있음.
  - 단, 법적으로 로열티의 지급 및 송금은 허여되지 않으나, INPI의 특허권 인정이 최종적으로 판정될 경우 소급적으로 로열티를 지급 및 송금할 수 있음.
- 한편, 특허는 특허증이 발급된 날부터 2년 내에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됨.

## ⑦ 실용신안

- 브라질법상 실용신안은 특허의 범주로 보호 받음.
  -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함으로서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적 보호방식으로는 특허법 체계 속에서 보호하는 방식(불란서, 브라질 등)과 실용신안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 보호하는 방식(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대별됨.
- 실용신안은 이미 알려진 대상(예컨대, 공구, 작업도구, 용구 등)의 사용상의 개량, 개선 등 작고 단순한 대상에 대해 적용됨.
  - 이와 같은 사용상의 정의는 상대성과 연관되므로, 산업설비상의 개량 등 복잡하거나 거대한 기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공정, 방식, 화학제품 등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기계공학 분야의 경우, 빈번히 발명특허로 출원하기에는 진보성(Inventive Step)의 요건이 미비하여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경우가 많음.
  -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많아 실용신안의 이용은 상당히 높은 편임.

## 2)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은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2차원과 3차원적인 표현에 의한 디자인을 모두 보호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는 산업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외관상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함.
- 산업디자인의 유효기간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0년이며 3회에 걸쳐 5년씩 연장이 가능함.

## 3) 상표권

- 브라질에서 상표등록은 INPI에서 하며, 유효한 상표가 되려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이어야 함.
- 소유권자의 의무
  - 상표등록 후 소유권자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리나 5년 내 미사용 시,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 연장 시, 마지막 10년에 요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 시 연장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부과금을 지불한 후 재연장 신청이 가능함.
  - 브라질산업소유권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소유자의 기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 상표권 분류

- 산업소유권법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표시면 법이 특별히 금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표등록의 대상이 됨.
- NPI에서 구분하는 상표의 형태에는 단어, 문자, 기호 등으로 구성된 지명상표(marca nominativa), 그림, 화상, 그래픽 등으로 구성된 표식상표(marca figurativa), 이들의 혼합인 복합상표(marca mista)의 3가지가 있음.
- 또한 상표는 일반상표, 특별상표, 유명상표, 국제유명상표의 4가지 분류가 가능함.
  - 일반상표(Marca Generica) : 일련제품의 원산지를 인식하도록 해주며, 특정회사의 모든 생산품목을 총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상표이기 때문에 해당제품의 특별상표와 같이 사용해야 함.
  - 특별상표(Marca Especifica) : 산업분야별로 구분되는 상표로, 크게 산업, 상업, 서비스분야로 구분됨.
  - 국제유명상표(Marca Notoriamente conhecida) : 파리협약 제6조bis(I)에 해당되는 상표로 등록 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특별한 보호를 받음.
- 한편 특별상표는 상표가 사용되는 경제활동분야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됨.

- Manufacturer' Marks (제조상표): 상품의 제조업자가 생산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상표의 대부분이 속함.
- Commercial Marks (판매상표): 판매업자가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품에 부착하는 상표로 판매업자의 신용을 표시하며, 경우에 따라 동일제품에 제조표와 판매표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함.
- Service Marks (서비스상표) : 전문가, 단체, 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이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함.

□ 국제유명상표의 특별보호

- 국제유명상표는 파리협약 제6조 bis(I)에 따른 국제적인 보호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해당상표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됨.
  - 국제유명상표의 정당하지 못한 사용이나 모방은 형사처벌을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유명상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INPI가 발급하는 유명상표증(NOTORIETY CERTIFICATE)이 필요함.
  - 유명상표증은 총 44개분류에 대해 상표보호의 효력을 발휘함.
  - 유명상표증의 발급은 최소 1개분류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고 90일에 걸친 유명상표출원의 공고기간 중 제3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발급됨.

- 그러나 유명상표의 결정은 INPI의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심사절차가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객관성이 없다는 결점이 있음.

#### □ 외국상표의 우선권

- 외국상표는 국제협약의 가입국에서 등록된 상표로 타가입국에 등록 시, 국제협약에서 정한 우선적 출원기간의 혜택을 받는 상표를 말함.
- 상표권이 "외국상표"로 인정될 경우 외화로 로얄티 지불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하기 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 파리협약서명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6개월간의 보호기간 내에 브라질에 상표권 등록신청을 해야 함.
- 동 사항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표권은 일반에 공개되며 해외주소지기업에 대한 등록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외화로 로얄티 지급이 인정되지 않음.
  -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기간 내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주된 이유는 상표권허여 또는 이전을 통해 로얄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임.

□ 상표의 유효기간과 등록기간 연장

- 상표는 INPI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씩 연장이 가능함.
  - 연장을 하지 않은 상표의 등록은 소멸되며,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취급되어 누구나 사용, 등록이 가능해 짐.
- 한편 등록된 상표권이 보호를 받으려면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함.
  -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을 등록일로부터 2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 상표권등록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됨.
  - 상표권의 사용증명은 소유인 또는 양수인이 증명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양허증명은 INPI에 등록된 기술이전계약(양허계약)에 상표권양허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함.

□ 상표권사용에 대한 로얄티지급

- 상표권사용에 대한 로얄티 지급은 등록 후 첫 10년에 한해서만 유효함.
- 브라질은 등록주의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INPI에 등록 없이 상표를 사용한 사용인이 동일 상표를 INPI에 등록한 경쟁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하기 경우의 상표권양허계약에 대해서는 로얄티지급이 인정되지 않음.
  - 상표권이 브라질에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보호기간 내에 브라질에서 상표권 등록이 출원되지 않은 경우
  - 상표권등록을 재연장하지 않은 경우
  - 보호기간 내에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이 브라질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한 경우
  - 상표권자가 해외에 주소가 있고 양수인의 자본에 다수지분을 소지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 상표권이전으로 전 상표권소유주가 로얄티 권리를 상실한 경우

#### □ 상표등록요건

- 브라질에 상표권등록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상표권등록사본을 INPI에 제출해야 함.
- 등록신청은 브라질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상표등록의 이해당사자이면 충족됨.
  - 구체적으로는 기업, 연방, 주, 시정부, 연방특구, 관계정부기관 등이 상표신청을 할 수 있음.
- 기업의 상표등록과 관련, 상표권자의 사업영역은 상표권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브라질에서 상표권 등록신청을 하려면 출원자가 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이며 상표권과 연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상표등록절차

- 브라질은 서면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은 서면에 의하며 구두에 의한 출원은 인정되지 않음.
-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해야 함.
- 지정상품이 동일상품 분류 내에 있을 경우 복수지정이 가능하나,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분류를 포괄할 경우 등록이 거절됨.
- 상표등록출원은 INPI가 정한 상품분류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2개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함.
  - 즉 각각의 상표마다 등록출원을 해야 함. (이를 “일상표 일출원의 원칙” 이라고 함)
- 상표등록출원은 선출원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함.
- 브라질에 상표권등록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하기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사전검색 : 의무절차는 아니지만 출원전에 INPI에 이미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원 : INPI 소정의 신청서를 통해 상표출원을 함.
- 예비심사 : 등록과 관련한 우선권의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유사 또는 동일상표가 등록접수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접수가 먼저된 것에 우선권을 부여함.
- 검색 :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
- 출원공고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 : 상표등록의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산업소유권잡지(Revista da Propriedade Industrial)에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간 제 3자의 이의 제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공고함..
- 등록증 발급 : 상표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증 발급 후 10년간 유효하며, 10년씩 재연장이 가능함.

#### □ 상표권의 소멸

- 상표권의 소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멸원인에는 하기의 내용이 포함됨.
  - 상표권의 포기
  -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상표등록의 취소
  - 상표의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표시를 의미함.

- 출처표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생지로 잘 알려진 국가, 지역, 도시명의 표시를 의미하며, 원산지표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국가, 지역, 도시명의 표시를 의미함.

#### 마. 산업소유권에 대한 침해

□ 산업소유권 침해는 특허범죄, 산업디자인범죄, 상표범죄, 지리적표시범죄, 불공정경쟁범죄 등으로 구분됨.

##### 1) 특허범죄

□ 특허독점권은 특허권의 발급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허권 발급일 이전의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특허출원자가 특허발급일을 예상하고 특허침해자 및 침해내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침해소송을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 특허침해자는 특허발급일 이후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특허심사의 연장,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등 특허발급을 최대한 연장하는 노력을 기울임.

□ 한편, 특허권자는 특허발급일로부터 1년 후인 행정금지청구기간의 소멸 후부터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즉,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함.

□ 특허침해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2가지가 있음.

- 형사소송

-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소송은 관할형사법원의 명령에 의한 '수색과 압수'절차인 예비절차로부터 시작됨.
-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법원은 2인의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며 동전문가들은 수색과 압수절차를 통해 동건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및 등록하게 됨.
- 특허권자는 법원등록일로부터 30일 내에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은 특허침해인 즉,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함.
- 반면, 피고인은 소재지관할법원에 출두함과 동시에 동소재지의 연방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할 수 있음.

## 2) 상표범죄

- 상표등록의 효과는 상표권자의 재산권을 독점사용권을 통해 보호하는 것임.
- 상표권자는 법적권리의 침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손실의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구제방법에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와 침해죄 등의 형사적 구제가 있음.
- 형사적 구제
  - 상표권자는 최초로 침해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은 상표권의 형사상 침해로 인정됨.
    - 등록상표의 모방이나 재생산
    - 제 3자가 소유한 원상표를 현혹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산 또는 모방을 하는 행위
    - 제 3자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
    - 상표를 부당하게 부착한 제품을 판매, 전시 및 보관하는 행위
  - 한편, 상표등록의 불충분한 공고는 상표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 브라질의 경우 등록상표는 INPI GAZETTE를 통하여 공표되는데,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 共知한 것으로 추정됨.
- 만일, 침해자가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색과 압류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이 때, 경찰은 해당제품을 시장에서 수거하도록 요청받는데, 이는 일종의 가처분으로 상표침해의 구제수단으로써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함.

□ 민사적 구제

- 상표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에 해당하는 조치로는 侵害禁止請求와 損害賠償請求의 2가지 방식이 있음.

바.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법률 제7646호(1987.12.18.)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제도를 설치했고 동 작업을 특허청이 맡도록 함.
- 재산권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생산,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청의 등록은 상당한 중요성이 있음.

- 재산권의 유효기간은 ‘출판일(Data de Lancamento)’, 즉 저작자가 해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날로부터 50년임.
-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재산권 대신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선 보호기간이 길며 영토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특허나 상표는 영토주의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권리보장을 신청해야 하나, 저작권은 브라질에서 등록될 경우 상호주의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됨.
- 소프트웨어법(Lei do Software)인 법률 제 9609호(1998년)는 지적재산인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는데, 저작권법(direito autoral)인 법률 9610호(1998년)에 의해 소프트웨어 창작자의 os direitos patrimoniais e morais를 보호하게 됨으로서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게됨.
- 국제경향에 따라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법(소프트웨어법)으로 보호를 강화함.
- 반면, 인격권(direitos morais)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보호기간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출판일 또는 각국에서 창작일 다음해 초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며, 일반저작권의 경우처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거주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유주에 대해서도 브라질에서 보호를 함.

- 즉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발표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본국에서 브라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브라질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동 보호는 상호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보호기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유효함.
- 단, 브라질 내에서의 불법복사가 성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브라질 INPI에 등록하는 것이 차후 국내법 절차상 보호편의를 위해 권고됨.

## 1) 조세

□ 브라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할 경우 유통, 서비스세(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 (I.C.M.S.))가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은 마그네틱미디어 (디스켓, CD롬등)의 가격에 12%가 부과됨.

○ 외국산 컴퓨터프로그램의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7.99%의 수입세(I.I.), 12%의 유통서비스세( I.C.M.S.)와 공산품세(I.P.I.)가 있음.

- 공산품세는 제품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나며,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이 발표하는 공산품세율표(Tabela de Incidência do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 TIPI)를 참조해야 함.

- 원천소득세는 일률적으로 15%가 부과됨.

## 2) 컴퓨터프로그램의 INPI 등록제도

- INPI 등록이 의무적은 아니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됨.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 중 문학, 음악, 조형예술 등은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 인정되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자기형태로 되어 있어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이외에 저작자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
- 1987년부터 법률 제 7646호(Lei N° 7.646)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여 민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해짐.
- 이후, 동 법은 WTO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협정(TRIPs),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들의 내용을 수용하여 법률 제 9609호(Lei N° 9.609)로 개편됨.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는 저작권법에 근거되는데, 이는 법률 제 9610호(Lei N° 9.610, 19.2.1998)로 규율됨.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50년간(창작일 다음해 1월1일부터 기산하여) 보호됨.

## 3) 소프트웨어의 등록절차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50년이며, 창작년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함.

- 브라질에서의 등록에 따라 WTO내 TRIPs 가입국에서도 인정되며, 자동적으로 상호(nome comercial)도 보호받음.
-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하기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을 구독하여 설명서를 숙독함.
  - 당사자는 설명서대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신청서를 접수함.
  - 특허청에서 서류등록과 보관에 필요한 납부금의 액수와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함.
    - 특허청은 납부영수증과 교환하여 등록신청서를 교부함.
- 등록요청 신청일부터 등록증의 발급까지 최대 90일이 소요되며, 등록신청 시 등록번호가 발부되므로 활용 가능함. ([www.inpi.gov.br](http://www.inpi.gov.br)) 혹은 ([www.receita.fazenda.gov.br](http://www.receita.fazenda.gov.br))

#### 4) 관련법규

-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판매 및 처벌에 관한 법규정은 지난 87년에 제정된 소프트웨어법(법률 제7646호, 1987.12.18 공포)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96036호(1988.5.16 공포)가 있음.
- 또한, 브라질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보호의 입장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보호는 73년의 저작권법(법률 제5988호, 1973.12.14 공포)에 의해서도 보호됨.

□ 소프트웨어법 법률 제9609/98 호(Lei nº 9.609, de 19.2.1998):

- 컴퓨터프로그램을 지적소유권,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
- 유통에 관한 규정
- 저작권 및 유통규범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법률 제 9609/98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화에 대한 국내 시장보호를 종식함.

- 즉, 외국자본기업들이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짐.
- 동법이 규정하는 여러 규범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들은 하기와 같음.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음. (제2조)

-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규율을 설정하고, 판매 시 정부 기관이 브라질 소프트웨어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통제기구를 설립함.

- 상업화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INPI에 등록함.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판매규칙을 위반 시, 형사적 처벌을 적용함.

□ INPI에 제출되는 정보는 법원명령이나 저작자의 요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대외비밀로 엄수함.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분분하나 브라질법은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계약이나 법률관계, 연구 또는 개발 등 유효기간 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나, 피고용인이나 개인 등이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이러한 피고용인들의 업무성격이 유관된 경우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당사자들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고용인 또는 서비스계약인(용역고용인)의 소유로 간주함.
- 만일,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계약이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개발되고, 고용인이나 서비스계약인(용역고용인)의 재정, 기술정보, 자료, 설비, 장비 등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권리는 개발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함.

## 5) 소프트웨어 유통

□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위해 SEPIN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 외국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위해 요구되었던 유사성 심사도 제거됨.

- 신법은 소프트웨어의 유통과 판매를 쉽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6) 소프트웨어 사용방식

-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사용은 사용허가계약(contrato de licença)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법은 생산, 배분, 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제3자의 소송으로부터의 당사자 면책조항을 무효화하고 있음.
- 만일, 이러한 사용허가계약이 없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구입 또는 복사본 라이선스에 관한 영수증으로서 대체할 수 있음.

## 7) 저작권침해행위와 처벌

- 소프트웨어법은 해적판이나 허가받지 않은 복사본을 사용할 경우, 탈세로 간주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행위의 경우 형사처벌 (6개월-2년의 구류와 벌금)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연방세무국(RF)은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됨.

## 3. 유의사항

- 브라질 현지 관련 제도의 사전 이해 필요
  - 대다수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허절차 때문에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관련 절차 준비 시 사전에 신임 있는 전문 변호사, 변리사 등과 상담 및 준비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함

□ BRICs 시장 선점을 위한 지재권 선등록 인식 필요

- 브라질이 BRICs 국가로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 브라질 현지 시장 진출 준비에 앞서 브라질의 특허, 상표등록 등 각종 관련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는 물론이고 진출준비와 더불어 지재권 선등록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것도 필요함.

## V. UAE

### 1. 우리 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사례

#### 가. A사의 사례

품목 : 차량용 네비게이터

침해유형 : 제품 디자인 도용

침해 내용 및 규모

- A사는 한국산 차량용 네비게이터를 수입하여 UAE 현지에서 유통, 판매하는 우리 업체로 값싼 중국산 유사 제품 유통으로 판매 가격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진행상황

-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나. K사의 사례

품목별 구분 : 자동차 부품

침해유형 : 유사 상표 도용

침해 내용 및 규모

- 유사상표 도용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된 상태임.

유통구조

- 중국 홍콩 소재 업체가 유럽 및 중동 국가에서 유사상표를 등록 중임.

진행상황

- 현황 검토 중임.

## 2.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 가. 개요

- 생산재 중 철강, 화학제품 등의 경우 제품의 특성 및 생산 기술상 위조 또는 모조품의 형태로 유통되거나 상표가 도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함.
-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의해 UAE로 수출되고 있는 소비재 중, 자동차, 타이어 등 기술 집약적 제품에 대해서는 위조 또는 모조 상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으나 소형 전자 기기 등은 중국산 유사 상품이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2005년, 두바이 경찰청 및 UAE 정보문화부(Ministry of Information & Culture) 등이 해적판 CD, DVD 등에 대한 압류 조치 및 단속 캠페인을 벌인 바 있으며, 복제품 판매 신고 전화를 개설함.

#### 나.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역

- UAE는 1974.9.2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바 있으나, 1974년 제정된 라스 알카이마 토후국(Ras Al-Khaimah emirate)의 상표권법이 유일할 정도로 지재권 보호에 취약했음.
- 그러나 1992년 상표권법(법령 37/1992호)이 개정 되었으며, 1993년 저작권법과 특허 및 의장권법(법령 40/1992호 및 44/1992호, 추후 7/2002호 및 17/2002호로 개정)이 발효됨.
- UAE는 WTO 회원국(1996.4월 가입)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협정 준수 의무가 있음.
  - 상기 17/2002호 법령은 TRIPS 협정에 발맞추기 위해 특허, 의장, 실용실안, 도안 등에 관련된 공업소유권 보장의 일환으로 제정됨.
- 현재 미국과의 FTA 협상 시 지재권 보호 부문이 현안이 되고 있으며 IT 부문,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 중동 아프리카 최대 자유 무역 시장인 UAE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상품의 생산보다 수입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편이며, 제3국에서 반입된 모조 상품이나 상표권이 도용된 제품의 경우 상표 도용 제품을 확인하더라도 생산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에 한계가 있음.

□ 상표권

○ 법의 개정

- 1992년 법령 37/1992호로 제정
- 1993.1.12일 발효
- 2002.7.31일 법령 8/2002호로 대체 및 관보 384호 공시

○ 경제무역부(Ministry of Economy & Commerce) 내 무역상  
표과(Trade Mark Section)에 신청 및 등록함.

- 등록 이후 각 상공회의소에 상표 관련 상세 내역을  
신고 해야 함.

○ 상표권 보장 기간 : 10년

□ 저작권

○ 1992년 법령 40/1992호로 제정

○ 1993.4.12일 발효(관련 규정 1994.9.1일 발효)

○ 2002.7.14일 7/2002호로 대체 및 관보 공시

○ Ministry of Information & Culture에 신청 및 등록

○ 저작권 보장 기간 : 저자 생전 시 및 사후 50년

- 단, 응용 미술(applied art) 및 방송용 저작물의 경우 인쇄 및 방송일로부터 각각 25년 및 20년

□ 특허/의장/실용실안권

- 1992년 법령 44/1992호로 제정
- 1993년 발효
- 2002.11.30일 17/2002호로 대체 및 관보 390호에 공시
- Ministry of Finance & Industry에 신청 및 등록
- 보장 기간
  - 특허 : 20년
  - 실용실안 : 10년
  - 의장 : 10년

다. 지적재산권 침해 시 구제 절차

-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 부서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간 대조, 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 가능

-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제품의 폐기와 경우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음.
-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 면허가 중지되며, 이 기간동안 UAE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됨.
-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 발간, 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함.
-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사전 예방 조치로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Dhs(1 \$=3.67 Dhs) 이상 10만 Dhs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를 실시함.

### 3. 외국기업의 대응 사례

- 최근 GM(General Motors)사는 자동차 부품 상표권을 도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반(反) 모조품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순정품 및 위조품 구별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위조 방지 세미나를 개최함.

## 4. 유의사항

### 지재권의 중요성 인식 및 사전 준비 필요

-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통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유사상표가 도용되지 않도록 상표권 등록을 진출 업종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에 있어서도 동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재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

- 지재권을 침해당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자사 홈페이지나 에이전시,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순정품과 위조품 구별법 등을 홍보하고 교육 등 상품 이미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

## VII. 맺음말

### 5. 요청사항

#### □ 현지 법률상담 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시 전담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법률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현지 변호사 고용비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필요

#### □ 국가 차원의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개별 기업이 투자진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령 및 보호제도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지 공관 및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우리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

#### □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교섭 강화

-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빈발국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통상교섭 강화 필요
- 개별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통상압력이 필요

-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시 WTO 제소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기획조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2006.9
06-048	금년 대중수출 둔화 원인 분석 및 전망	2006.9
06-049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9
06-050	일본 e-비즈니스 시장, TechNiCs로 승부하라	2006.9
06-051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TBT) 동향과 피해사례	2006.9
06-052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	2006.9
06-053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2006.9
06-054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 - 브라질, 남아공 등 4개국편 -	2006.9

06-05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북미편	2006.9
--------	-------------------------	--------

## □ 무공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06-022	중동아프리카지역 산유국의 주요 플랜트 개발정책 및 참여 유망 프로젝트	2006.9
06-023	중동아프리카지역 발주기관/에이전트/EPC업체 디렉터리	2006.9

## □ 산업페이퍼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 □ 산업연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

## 작 성 자

- ◆ 고일훈 과장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 ◆ 안영주 과장 (멕시코시티 무역관)
- ◆ 이영희 과장 (두바이 무역관)
- ◆ 지윤정 과장 (상파울루 무역관)
- ◆ 신순재 과장 (해외조사팀)

##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 : 남아공, 브라질 등 5개국편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